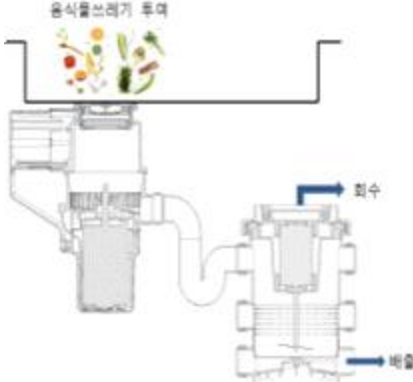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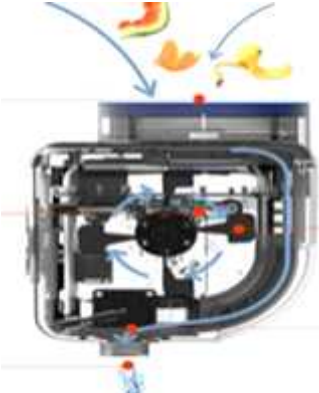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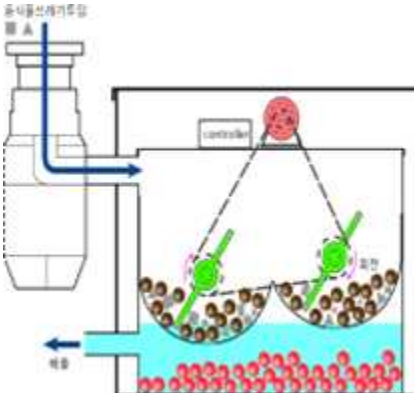


참고

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조 및 불법 제품 사례(대외 주의)

1.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의 구조

구분	분쇄회수방식	
	거름망형	스크류형
모식도	 ▶ 칼날, 맷돌 등으로 음식물 분쇄 후 거름장치를 이용해 회수	 ▶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분쇄와 동시에 회수
분쇄부		
구분	미생물방식	
	주방용수 우회배출형	주방용수 직투입형
모식도	 ▶ 주방용수는 배출하고 음식물만 미생물조에 투입하여 처리	 ▶ 주방용수와 음식물이 미생물조에 함께 투입되어 처리

2.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판매 유형

□ 불법판매 유형 등

- (판매방법)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른(기능·고형물 회수율 등) 제품을 제작·판매
 -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서 판매
- (불법판매 유형) 2차 처리기 내부기능(수거망·하부거름망) 탈·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
 - 분쇄기의 칼날, 배출거름망 외곽부 개조 및 제품인증표시 미부착, 인증기관 경과 제품 판매 등

〈불법판매 제품사진〉

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		분쇄기에 대형 칼날로 개조
2차 처리기에 배출거름망 없음(100% 배출)		배출거름망 외곽부 개조 (외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불법 개·변조)

3.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개·변조 사례

□ 점검 시 착안사항

-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분리·배출할 수 있도록 회수부 덮개가 개폐 가능함을 확인
- 회수부 내부의 거름망(여과망)이 고정되어 있어야 함
-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경우, 분쇄·회수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하지 아니함
-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경우, 외형적으로 개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, 내부구조가 최초인증 받을 당시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

□ 분쇄형 분쇄기 불법 개·변조 사례

	
○ 분쇄기만 단독사용, 2차처리기 없음	○ 분쇄부와 회수부가 분리되는 경우 - 소비자가 직접 개·변조가 용이 하도록 한 볼트, 너트 체결방식은 일체형으로 인정하지 않음.
	
○ 거름망(여과망) 제거	○ 회수부를 우회하는 배관 연결
	
○ 회수부 내 거름망 일부 절단	

□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불법 개·변조 사례



- 분쇄기와 2차측(미생물액상발효소멸조)의 연결부를 단순자바라 호수로 쓰는 경우
- 일반 자바라 호수를 사용하여 설치



- 전선이 들어간 자바라 호수를 사용하여 설치

4. 인증 유효기간 및 표시사항 관련 사항

☐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여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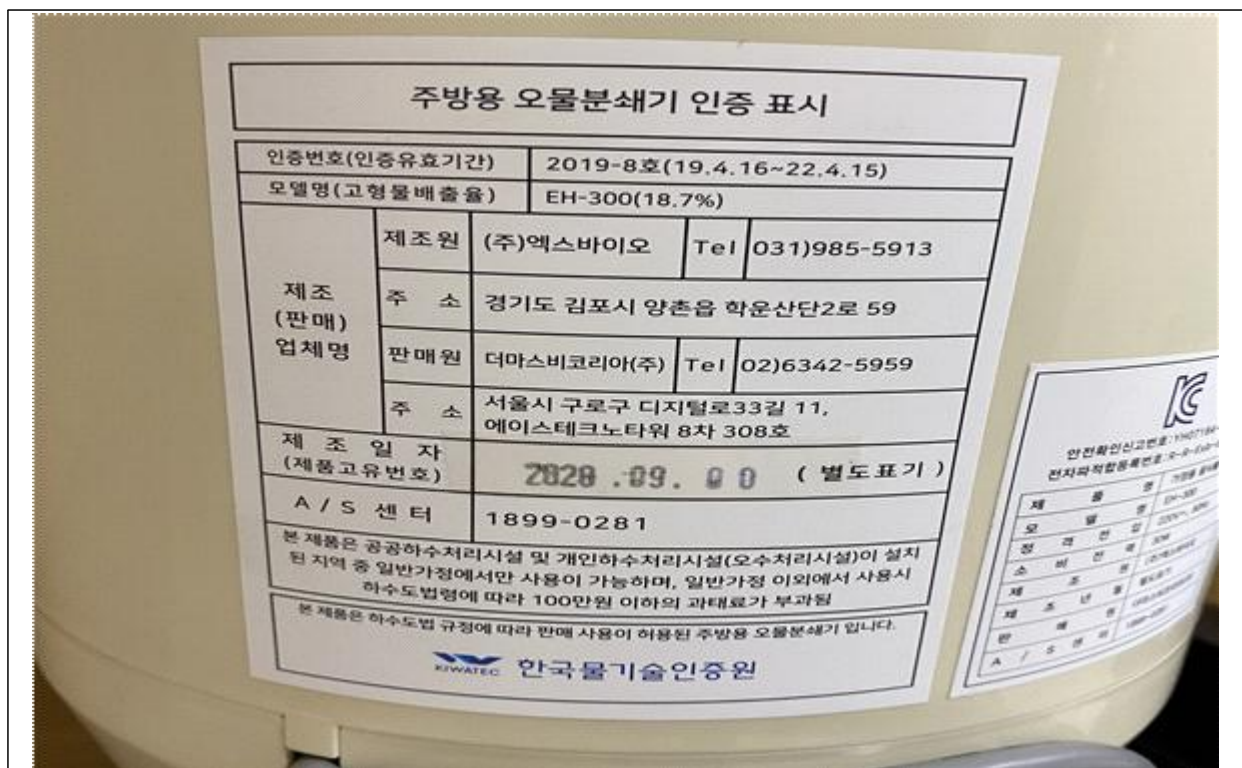
-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·사용금지(환경부고시 제2017-13호)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이 기간 중 인증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가 가능함
→ 따라서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·판매가 되는 제품은 하수도법 제76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<인증기간에 따른 판매·사용 가능 여부(예)>

구분	인증일	유효기간(3년)	인증만료일	유효기간 만료
일자	2022.6.16	↔	2025.6.15	↔
합법여부		제조·수입·판매 가능		제조·판매 불법

<조사 시 착안사항>

- 인증제품에 부착된 인증표시사항의 '인증유효기간'과 '제조일자'를 검토하여 제조 일자가 인증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



□ 인증 표시사항 제품부착 여부 (계도사항)

-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·사용금지(환경부고시 제2017-13호) 제9조제3항 및 상기 별표 5에 따라 인증 표시사항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.

→ 다만 2014년도 이전 인증제품의 경우, 인증표시 기준이 없어 인증기업에서 자체 인증번호, 모델명, 시험기관 등을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함

※ 인증표시 사항 미부착 또는 내용 누락 시 법적 제제사항(벌칙, 과태료)은 없으나 해당업체에 대한 계도 필요

<'14년 이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>



<'14년 이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>

